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의원 대표발의】



2013. 9.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7호로 2013년 9월 3일 고기판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0조)

다.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7조 ~ 제11조, 안 제14조 ~ 제17조까지에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 우선구매, 보조금 지급, 표창의 수여,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교육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지역 사회 조기 정착 및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뒷받침 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절차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그간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법」에 의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호 장치가 가동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의 부재 등을 보완하여 자치구의 역할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익신고는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문제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2012년 4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